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15년)이 2020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재산 현황

- 1) 시설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 2) 위치 :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 (설치일 : 2005.07.11.)
- 3) 처리용량 : 95톤/일(최대 123.5톤/일)
- 4) 처리방식 : 사료화 (액상 + 건식) + 바이오가스화
- 5) 건축면적 : 746.72 m²(사료화시설 701.19m² + 관리동 45.63m²)
- 6)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m 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746.72		
지하1층	125.19	저장조	음폐수 저장조
지상1층	576	공장동	사료화시설 운영
지상1층	45.53	사무실	

나. 위탁기간 : 2021년 ~ 2025년(5년)

다. 위탁운영비

(단위:백만원)

비목 \ 구분		Y	Y+1	Y+2	Y+3	Y+4
노무비	직접노무비	468,569,880	489,075,053	510,477,557	532,816,660	556,133,348
	간접노무비	214,342,848	223,722,745	233,513,117	243,731,928	254,397,926
	소 계	682,912,728	712,797,798	743,990,674	776,548,588	810,531,274
경비	전 력 비	40,802,184	40,991,208	41,181,108	41,371,888	41,563,552
	수도광열비	260,189,843	261,395,225	262,606,191	263,822,767	265,044,979
	수리수선비	479,370,582	481,591,363	483,822,432	486,063,837	488,315,626
	시험검사비	2,178,880	2,188,974	2,199,115	2,209,303	2,219,538
	보험료	65,936,041	68,834,848	71,861,098	75,020,393	78,318,583
	복리후생비	32,613,161	32,764,248	32,916,035	33,068,525	33,221,722
	약품비	3,297,476	3,312,752	3,328,099	3,343,517	3,359,007
	폐기물처리비	503,577,622	505,910,547	508,254,280	510,608,871	512,974,370
	세금과공과	13,589,963	13,652,921	13,716,171	13,779,714	13,843,551
	소모품비	30,173,304	30,313,088	30,453,520	30,594,602	30,736,338
	지급수수료	7,865,233	7,901,671	7,938,277	7,975,053	8,011,999
	유류비	1,806,191	1,814,559	1,822,965	1,831,410	1,839,894
	소 계	1,441,400,481	1,450,671,404	1,460,099,291	1,469,689,880	1,479,449,159
합 계		2,124,313,209	2,163,469,202	2,204,089,965	2,246,238,468	2,289,980,433
일반관리비(10%)		212,431,321	216,346,920	220,408,997	224,623,847	228,998,043
이윤(10%)		233,674,453	237,981,612	242,449,896	247,086,232	251,897,848
위탁운영원가		2,570,418,983	2,617,797,734	2,666,948,858	2,717,948,547	2,770,876,324
예측처리량(톤/년)		37,728.57	37,728.57	37,728.57	37,728.57	37,728.57
톤 당 처리비		68,129	69,385	70,688	72,040	73,442
인상률			1.84%	1.88%	1.91%	1.95%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임

3.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m²)	필 지	면적(m²)	
합 계			1	746.72	1	1,650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공공용 재 산	1	746.72	1	1,650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내 입지
		기업용 재 산					
		보존용 재 산					
	일 반 재 산	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 시 설 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 위 치 :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

□ 주 용 도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시설규모

- 부 지 면 적 : 1,650m²
- 건 축 면 적 : 746.72m²
- 처 리 용 량 : 95톤/일

□ 건축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알루미늄복합판넬

구분	연면적(m 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746.72		
지하1층	125.19	저장조	음 폐수 저장조
지상1층	576	공장동	사료화 시설 운영
지상1층	45.53	사무실	

□ 설비 및 부대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물 내 역	비 고
기계설비	폐기물크레인(1),파쇄기(2),탈수시설(2)건조시설(2),멸균시설(1),밀크라셔, 드럼스크린(1),액상사료저장조(1),정량공급기,정렬콘베어,이송콘베어,임시 교반조,이송펌프,브로워,카본타워,협잡물 배출콘베어,플라이트콘베어,드럼 스크린,스큐류콘베어((3),워터펌프,폐수정장조,쿨링타워,워터펌프증기응축 기,브로워,활성탄흡착탑,액상사료저장조,스팀보일러,버너,계근대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전력시스템, 실내조명시설, 옥외보안등설비 등	
통신설비	CCTV, 구내통신선로, 구내유선방송설비 등	
소방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 위탁기간 : 2021년 ~ 2025년(5년)

□ 위탁운영비

비목 \ 구분	Y	Y+1	Y+2	Y+3	Y+4
위탁운영원가	2,570,418,983	2,617,797,734	2,666,948,858	2,717,948,547	2,770,876,324
예측처리량(톤/년)	37,728.57	37,728.57	37,728.57	37,728.57	37,728.57
톤당처리비	68,129	69,385	70,688	72,040	73,442
인상률		1.84%	1.88%	1.91%	1.95%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임

□ 주요위탁사무

- 반입되는 생활(음식물)폐기물 계량관리·자료관리
- 사료사(95톤/일) 운전·유지관리 (처리능력 유지)
- 잔재물계량 및 적정처리(안전한 최종처리 완수)
- 전력설비, 발전설비 등 운전·유지관리 (전기시설물 기능 유지)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전화, LAN설비 등)
- 계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견학·방문 안내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관 계 법 령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적성과 적법성을 시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도·군위원회 :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이 금 향
	담 당 자	전 동 희 (480-5222)